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89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9나589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소13881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상인회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 선고 2020. 2. 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가소13881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54. 2. 3. 서울 중구 D 및 E 일원의 'F 시장'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전통시장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2010. 7. 1. 법률명 변경,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2007. 11. 30. 서울 중구청장으로부터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F시장권역의 청소, 화재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2. 8.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서울 중구청에 F시장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도 마쳤다.

나. 피고1)는 서울 중구 G상가(지하 1층과 지상 1~4층으로 구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2층 점포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2008. 1.경 이 사건 상가 2층 중 H호 점포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인이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하여 ① 대지 및 건물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지주회와 ② 입점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각 층별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상가의 상인회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조(의무)

가. 회원은 본 상인회의 모든 규약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위반시는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나. 회원은 의결된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상인회 사업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1조(관리비 및 수입)

가. 회원 또는 점포주는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일정액의 유지관리비 및 운영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관리비는 상인회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점포주, 임차인, 전차인) 또는 공실 점포주가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3개월 이상 관리비 및 제반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점포의 단전 단수조치 및 협의회 의결을 거쳐 점포의 폐쇄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 수도료, 각종 보험금 등 공과금을 상가 운영의 편의상 관리비와 동시에 고지하고 징수하여 별도 계정 관리한다.

제29조(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회원은 회원으로 자동 가입된 날로부터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의결된 각종 납부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회칙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부과되는 관리비의 세부항목은 ① 전기료, ② 수도료, ③ 일반관리비, ④ 청소관리비외, ⑤ 운영회비, ⑥ 냉, 난방비, ⑦ E/S보수유지비로 구성되어 있다. 위 관리비 항목 중 ④ 청소관리비외 항목은 F시장 전체 차원의 청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2층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다음 소외 회사에 납부하는 부분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와 피고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2008. 4.부터 2018. 3.까지 매월 원고로부터 ④ 청소관리비외 명목(이하 '이 사건 청소관리비 등'이라 한다)으로 30,000원을 징수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600,000원(= 120개월 × 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 사건 청소관리비 등을 부과하여 징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를 통하여 상인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소관리비 등을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전통시장법 제65조, 제67조2)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위법 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는 위법 제67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과 아울러, 그 회원인 상인들을 상대로 이러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는 상인회 외에 전통시장법 제67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나머지 자들이 시장관리자로 지정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참조).

② 소외 회사는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도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는 위 전통시장법에 따라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인들에 대하여 부과·징수할 권한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청소관리비 등은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청소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철민

판사마은혁

판사강화석

1) F시장에는 F시장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상인회가 있고, 피고는 [상인회의 지회로 보인다.

2)전통시장법 제6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시장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업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 청소 및 방범활동,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상거래 질서의 확립,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